

# 사회심리적 위험: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위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고백하는 연예인이 늘면서 이 질환은 연예인의 직업병처럼 여길 만큼 이제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심리적 질병이다. 그런데 공황장애는 지하철 기관사들이 많이 앓아왔던 질환이었으며, 실제로 이 질환을 앓았던 기관사가 2004년 1월 29일에 산재로 처음 인정되기도 하였다(한겨레, 2014년 2월 9일자). 그리고 최근 서비스업 종사자나 사무직을 중심으로 감정노동,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경향신문, 2016년 3월 15일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도 근로자가 겪는 사회심리적 위험을 사업주가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호 특집의 프랑스 사례에서 “근본적인 질문은, 기존의 법적 수단이 사회심리적 위험을 잡아내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사회심리적 위험을 반드시 객관화해야 하는지이다”(p.12)라는 자성의 말은 우리의 정책 당국도 전문가도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게다가 프랑스 대법원은 이미 10년 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우

리에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는 표식이기도 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는 유럽의 3개국이 브렉시트, 민족갈등 등 새로운 위협에의 노출 속에서 자국의 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심리적 위험의 예방과 관련하여 가지는 고민을 이번 호 특집에서 풀어내고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 이에 수반하는 작업방식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변화 등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새로운 위험을 가져다줄지도 유럽의 안전보건 책임자와 전문가에게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자가 근무과정과 근무환경에서 노출되는 사회심리적 위험을 조사하여 논의의 자료를 제공해주었던 유럽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는 최근 새롭게 노출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발빠르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이라 한다면, 한국에도 유럽근로환경조사와 설문 내용을 공유하는 근로환경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위험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노력이 전문가, 정책 당국으로부터 흘러나와 현장의 근로자에게 그리고 사업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헛된 수고일 뿐이며, 의미 없는 투자일 뿐이다. 한시가 급한 것은 사회심리적 위험의 중요성을 사업주, 근로자 본인, 노동조합 간부,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심리적 위험의 연구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본지는 5년 전에 “작업장에서의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다시 읽어봐도 당시의 고민이 여전히 유효함을 느끼게 된다. 이 글들을 이번 특집과 함께 읽어본다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사무실에서 고객과 만나면서 쌓여가지만 하는 사회심리적 위험을 둘러싼 문제를 생각해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원도 일찍이 유통 부문, 콜센터, 우체국 직원, 형사 등 고객이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종의 감정노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건강 불평등 문제 등으로 연구의 시야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기초적인 연구의 결과가 사회심리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재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KLI**